

< 2022년 FTA특례법령 개정사항2 교재순 >

구민회 관제사

★ 개정된 법률 총정리 - 교재순 (기존 교재를 보면서 개정사항 정리)

★ 출제 가능성에 따른 중요도 표시

개정중요도를 ★/★★/★★★ 로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세요.
단, 개정의 중요도이지 내용의 중요도는 아님.

★ 개정의 성격을 표시함

1. 개정내용이 신규법률이면 **신설**
2. 개정내용의 내용의 변화이거나 명칭의 변화이면 **변경**
3. 개정내용이 기존내용의 정리적 성격이면 **정리**
4. 개정내용이 없어지는 거면 **삭제**
5. 개정내용이 하위법률에서 상위 법률로 우상향되었다면 **승격**

★ 개정된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시함

● **교재 22페이지 ★ - 신설**

2. 협정관세율의 종류

(1) ~ (19) 현행과 동일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4조에 따라 같은 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를 말하며, 이하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

※ 영 별표 17의6

● **교재 46~47페이지 ★★★ - 삭제 및 개정**

(2)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각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1) 칠레와의 협정

◆ 서명일로부터 2년.

2)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3) 페루와의 협정

◆ 서명일로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4) 미합중국과의 협정

◆ 서명일로부터 4년

5) 콜롬비아와의 협정 (삭제)

◆ 서명일로부터 1년 (삭제)

6) 호주와의 협정

발급일 또는 서명일로부터 2년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

※ 자율발급의 경우 : 서명일

7) 캐나다와의 협정

- ◆ 서명일부터 2년

8) 뉴질랜드와의 협정

- ◆ 서명일부터 2년

9) 베트남과 협정

- ◆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10)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삭제)~~

- ◆ 서명일부터 1년 (삭제)

11)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 ◆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12) 이스라엘과의 협정

- ◆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 **교재 49 ~ 51페이지 ★★★ - 신설**

6. 협정별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1) 기관발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현행과 같음.

8)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9)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

(2) 자율발급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현행과 같음.

13) 이스라엘과의 협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①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19조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② 물품의 가치가 미화 1천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수출자

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

● 교재 53페이지 ★★★ - 신설

7. 원산지 증명서 발급기관

(1) ~ (7) 현행과 같음

(8)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9) 이스라엘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1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브루나이 دار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재정경제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산업통상부 또는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산업무역부

- 11)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 가. 호주상공회의소 또는 호주산업협회
 - 나.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 12)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중국해관총서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 13) 일본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일본 상공회의소
- 14)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18.3조제1항자목에 따른 사무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기관
- 15)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 **교재 56페이지 ★★★ - 신설**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재발급

증명서발급기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아세안회원국 및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발급기관은 당초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일을 확인하여 재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교재 61페이지 ★ - 신설**

1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 (17) 현행과 동일.

(18)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4 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9)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24호의5서식. 다만, 다수의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6서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2) 제7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서식

● 교재 93페이지 ★★★ - 신설

2.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 조사결과 회신기간

(1) 회신기간

① ~ ⑬ 현행과 동일

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조사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 교재 99페이지 ★★★ - 신설

3. 체약상대국별 조사방법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 (17) 현행과 동일

(18) 인도네시아에서 수입된 물품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제3.23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3조제3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9)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의 원산지 확인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때에는 이스라엘과의 협정 제3.29조제7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추가 정보나 서류를 요청하거나 같은 협정 제3.29조제7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당사국(아세안회원국, 호주, 중화인민공화국, 일본국 및 뉴질랜드)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
- ②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3.24조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하는 방법. 다만,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지조사는 가목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 **교재 113페이지 ★★ - 신설**

4.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기획재정부장관은 상기에 따른 긴급관세조치를 1년을 초과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의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 외의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약상대국"이란 - 시행령 제27조

싱가포르, 페루, 미합중국(자동차를 제외한 물품의 원산지가 미합중국인 경우로 한정한다), 터키,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국, 중미 공화국들,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말한다.

● **교재 121페이지 ★★ - 신설**

4. 대항조치의 특례

(1) ~ (10) 현행과 동일

(1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긴급관세조치가 수입물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부과되고 그러한 조치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같은 협정 제7.7조제5항에 따라 그 긴급관세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대항조치를 할 수 없다.

● **교재 124페이지 ★ - 신설**

1.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시행령 제21조)

(1) ~ (19) 현행과 동일

(20)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획재정부장관은 긴급관세조치를 하기 전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3조에 따라 해당 당사국에 서면으로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긴급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 및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 **교재 125페이지 ★ - 신설**

2.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시행령 제22조)

(1) ~ (5) 현행과 동일

(6)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법 제22조제1항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가 끝났을 때에는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협정관세에 따른 세율의 연차적인 인하 적용을 중지하고, 그 중지한 날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조치
2. 긴급관세조치를 하는 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발효일 전날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최혜국세율 중 낮은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조치

상기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대해서

는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없다.

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1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물량이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 동안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각 당사국으로부터 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합이 전체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해당 물품의 물량의 100분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당사국의 해당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할 수 있다.

2.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

● 교재 128~130페이지 ★★ - 신설

(1) 긴급관세 과도기간

1) ~ 16) 현행과 동일

17)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른 과도기간(협정 발효일부부터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완료일 이후 8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과도기간의 첫 해에는 긴급관세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2)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

1) ~ 18) 현행과 동일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3년

(3) 긴급관세조치 총기간

1) ~ 18) 현행과 동일

19)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4년

● 교재 132페이지 ★ - 신설

(1)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1) ~ 13) 현행과 동일

14)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5조제5항에 따라 긴급관세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으로서 그 조치가 끝난 날부터 그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적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교재 133페이지 ★ - 신설**

5.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시행령 제25조)

- (2)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 경제협정당사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그 조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하여 계약상대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재 134~136페이지 ★★ - 신설**

3. 협정별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 (1) 서면통지기한

무역위원회는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이하 “덤핑방지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해당 계약상대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1)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미합중국,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미 공화국들 및 이스라엘 : 조사를 시작하기 전
- 2) 인도 :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 3) 유럽연합당사자, 터키, 베트남, 영국 및 인도네시아 :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
- 4) 중국 및 **역내경제협정당사국** : 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

- (2) ~ (12) 현행과 동일

- (13)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무역위원회는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생산자, 수출자 또는 수입자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무역위원회가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61조제5항에 따른 덤핑 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교재 137~138페이지 ★★ - 신설

3. 협정별 상계관세의 특례

(1) 통보

무역위원회는 제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57조에 따른 상계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서면통보 및 협의

무역위원회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유럽연합당사자, 페루, 미합중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역내포괄적협정당사국**, 중미 공화국들, 영국, 인도네시아 또는 이스라엘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의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2.9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의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해당 제약상대국에 그 내용(페루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질의서 사본 및 조사대상 물품의 주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목록)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제약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이 서면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제8.1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

(3) ~ (10) 현행과 같음

(11) 역내경제협정당사국

① 무역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등으로부터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을 받은 경우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2조제3항에 따라 **역내경제협정당사국 중 조사대상이 되는 물품의 수출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조사신청과 관련된 자료(「관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 따른 비밀이 아닌 요약서를 말한다)를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2. 1. 25.>**

② 무역위원회는 상계관세 부과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1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현장조사에 필요한 준비사항, 검증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을 현장조사의 대상이 되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역내경제협정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75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 등을 받은 물품의 수입사실과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에 관한 본조사의 결과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7.14조에 따라 최종판정을 하기 10일 전까지 최종판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에게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핵심적 고려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무역위원회는 그 서면통보를 받은 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교재 147~148페이지 ★★ - 신설

2. 일시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구체적인 면제대상

(1) 수입신고의 수리일(受理日)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대상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서 칠레·페루·미합중국·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으로 한다.

다만, 호주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⑥의 물품으로 한정하고,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①부터 ④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①부터 ⑤까지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①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장비
- ②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 ③ 운동경기용 물품(시범용 또는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 ④ 상용견품
- ⑤ 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 다만, 일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 ⑥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

2) 면제요건 - 현행과 같음.

3) 담보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면제되는 세액(관세법 제4조에 따른 내국세등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10(③부터 ⑧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법」 제24조, 제25조 및 제108조를 준용한다.

- ①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받으려는 1)①부터 ③까지의 물품(칠레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 ② 페루와의 협정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 ③ 콜롬비아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 ④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③까지의 물품(캐나다가 원산지인 물품은 제외한다)
- ⑤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 ⑥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 ⑦ 중국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④까지의 물품
- ⑧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⑨ 이스라엘과의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 받으려는 1)①부터 ⑤까지의 물품

● **교재 149페이지 ★★ - 신설**

(3) 일정 금액 이하의 상용견품(商用見品)·광고용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상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칠레·페루·미합중국·호주·캐나다·콜롬비아·뉴질랜드·베트남·중국 및 중미 공화국들과의 협정,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으로 한다. 다만,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한하여 1)의 물품 중 담배는 제외하고, 3)물품은 미합중국, 콜롬비아 및 뉴질랜드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한정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물품 중 1)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과세가격\$250)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 3)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의 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물품